



보건복지부 허가 제219-10호

정 관 변 경 허 가 서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2024. 4. 9.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1의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원표

총원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u>142</u>	1	3	7	<u>16</u>	<u>23</u>	<u>41</u>	<u>37</u>	<u>14</u>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변 경								
[별표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원표									[별표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원표								
총원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총원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27	1	3	7	15	22	38	31	10	<u>142</u>	1	3	7	<u>16</u>	<u>23</u>	<u>41</u>	<u>37</u>	<u>14</u>